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①-1 건축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 **(자격증)** 건축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 당해 분야 인정범위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 또는 "3.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
-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전문분야 항목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등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충남의 경우 건축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

①-2 건축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자격증)** 건축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 당해 분야 인정범위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 또는 "3.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전문분야 항목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등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중앙
경기

❖ **(학력)** 건축과·건축학과·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경기의 경우 건축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

②-1 구급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p>❖ (자격증) 구급 관련 자격증(의사·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한 후,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div> <p>○ 당해 기관 인정범위(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div>
--	--

②-2 구급분야(항공)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경남 제주	<p>❖ (자격증) 구급 관련 자격증(의사·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한 후,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p> <p>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p> </div> <p>○ 당해 기관 인정범위(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p>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p> <p>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p> <p>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필요)</p> <p>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p>*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div>
----------	---

③ 구급상황관리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경기	<p>❖ (공공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그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임용예정계급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p>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	---

④-1 구조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p>❖ (공공경력)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특수부대 근무경력 :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p>※ 미인정 기간 :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p> <p>○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1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 각 군별*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 <p>* 육군 :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발급처 : 육군본부 병적민원과)</p> <p>해·공군 : '기타'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 (발급처 :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p> <p>해병대 :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발급처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① (육 군) 육군특전사, 정보사,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수색대대, 연대수색중대, 특공연대·대대, 특공여단, 기동대대, 연대기동중대, 기계화사단정찰대, 기계화사단정보대대예하지상정찰중대</p> <p>(공 군) 공군공정통제사(CCT),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p> <p>(해 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p> <p>(해병대)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p> <p>(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24특임대대</p> </div> <p>②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p>
--	---

④-2 구조분야(수난)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울산 세종 강원	<p>□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p>❖ (공공경력)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특수부대 근무경력 :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p>※ 미인정 기간 :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p> <p>○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1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 각 군별*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 <p>* 육군 :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발급처 : 육군본부 병적민원과)</p> <p>해·공군 : '기타'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 (발급처 :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p> <p>해병대 :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발급처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① 해군 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p> <p>② 해군 정보부대(UDU)</p> <p>③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p> </div> <p>❖ (자격증) 잠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대 보험적용 사업장 근무자)</p> <p>* 관련 자격증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p>
----------------	---

④-3 구조분야(항공)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경남
제주

- ❖ **(공공경력)**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특수부대 근무경력 :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미인정 기간 :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
 -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
 - **경력증명서 1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 **각 군별*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
 - * 육군 :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발급처 : 육군본부 병적민원과)
 - 해·공군** : '기타'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
(발급처 :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 해병대** :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발급처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 ① **(육 군)** 육군특전사, 정보사,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수색대대, 연대수색중대, 특공연대·대대, 특공여단, 기동대대, 연대기동중대, 기계화사단정찰대, 기계화사단정보대대예하지상정찰중대
 - (공 군)** 공군공정통제사(CCT),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 (해 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
 - (해병대)**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
 -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24특임대대
- ②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

⑤ 기계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충남	<p>❖ (자격증) 기계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기 술 사</td> <td>기계</td> </tr> <tr> <td>기 능 장</td> <td>기계가공</td> </tr> <tr> <td>기 사</td> <td>일반기계, 기계설계</td> </tr> </table> <p>○ 당해 분야 인정범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td> </tr> </table> <p>※ 충남의 경우 기계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p>	기 술 사	기계	기 능 장	기계가공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 술 사	기계							
기 능 장	기계가공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⑥ 노무관리분야 (소방교)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부산	<p>❖ (공공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 근무(연구)경력은 노무 관련 법령해석, 심판·조정·자문·상담·지도, 단체교섭, 진정·고발·소송 대응 등 관련 실무경력에 한함</p> <p>※ 임용예정계급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p>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	---

⑦ 법무분야 (소방경) / 시험절차(면접)

서울 충북 전북 전남	<p><input type="checkbox"/>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p>❖ (자격)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사법연수원 수료자)</p> <p>❖ (자격)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p>
----------------------	---

⑧-1 소방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세종	<p>❖ (자격증)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30%;">기술사</td><td>소방</td></tr> <tr><td>관리사</td><td>소방시설</td></tr> <tr><td>기사</td><td>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td></tr> <tr><td>산업기사</td><td>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td></tr> </table> <p>○ 당해 분야 인정범위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3.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⑧-2 소방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경기	<p>□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p>❖ (자격증)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30%;">기술사</td><td>소방</td></tr> <tr><td>관리사</td><td>소방시설</td></tr> <tr><td>기사</td><td>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td></tr> <tr><td>산업기사</td><td>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td></tr> </table> <p>○ 당해 분야 인정범위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3.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p>❖ (학력)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p>※ 경기의 경우 소방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관련부서에 근무</p>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⑧-3 소방분야(소방관련학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창원	<p>□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전문 포함)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력)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p>*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함【붙임 13】</p>
--	--

⑧-4 소방분야 [소방장] / 시험절차(필기, 면접)

경기	<p>□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기술사</td> <td style="padding: 2px;">소방</td> </tr> <tr> <td style="padding: 2px;">관리사</td> <td style="padding: 2px;">소방시설</td> </tr> </table> ○ 당해 분야 인정범위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3.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학력)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p>※ 경기의 경우 소방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관련부서에 근무</p>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⑨-1 소방정분야(기관사)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중앙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자격증) 1~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	---

⑨-2 소방정분야(항해사)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중앙 부산 전남 경남 창원	❖ (자격증) 1~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	---

⑩-1 심리상담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 (공공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근무(연구)경력은 심리상담 연구·조사·분석,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실무경력에 한함 ※ 임용예정계급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

⑩-2 정신건강분야 [소방교]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세종	❖ (공공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근무(연구)경력은 정신건강 치료·간호·임상심리 실무경력에 한함 ※ 임용예정계급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

⑪ 안전관리분야(가스)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울산 강원	❖ (자격증) 가스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30%;">기술사</td><td>가스</td></tr> <tr><td>기능장</td><td>가스</td></tr> <tr><td>기사</td><td>가스</td></tr> <tr><td>산업기사</td><td>가스</td></tr> <tr><td>기능사</td><td>가스</td></tr> </table>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가스									
	○ 당해 분야 인정범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td></tr> <tr><td>-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안전관리분야(가스)"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td></tr> </table>	-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안전관리분야(가스)"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안전관리분야(가스)"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⑫ 언론공보분야(콘텐츠제작)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인천	❖ (공공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은 디지털콘텐츠(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과 관련된 실무경력에 한함 ※ 임용예정계급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3)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

⑬ 외국어분야(영어) [소방교]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세종	❖ (검정시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어느 하나 기준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TOEIC Speaking 7등급 이상</td></tr> <tr><td>IELTS 8등급 이상</td></tr> <tr><td>TOEFL Speaking section 27점</td></tr> <tr><td>TEPS-Speaking 1등급 이상</td></tr> </table> ※ 위의 검정시험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다.	TOEIC Speaking 7등급 이상	IELTS 8등급 이상	TOEFL Speaking section 27점
TOEIC Speaking 7등급 이상				
IELTS 8등급 이상				
TOEFL Speaking section 27점				
TEPS-Speaking 1등급 이상				
	2.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 ○ 전문성 확인을 위해 면접시험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예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⑭ **의무소방전역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세종 강원 충북 경남	❖ (공공경력)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사람 ※ 만기전역 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
----------------------	--

⑮ **자동차정비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중앙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 (자격증) 자동차정비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군 경력은 제외) ○ 자격증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기술사</td> <td>차량</td> </tr> <tr> <td>기능장</td> <td></td> </tr> <tr> <td>기사</td> <td>자동차 정비</td> </tr> <tr> <td>산업기사</td> <td></td> </tr> <tr> <td>기능사</td> <td>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td> </tr> </table> ○ 당해 분야 인정범위(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차량의 제조 또는 정비업체 ○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 판금·도색관련 업무 제외) *법 개정전 1급 공업사 </td> </tr> </table>	기술사	차량	기능장		기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차량의 제조 또는 정비업체 ○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 판금·도색관련 업무 제외) *법 개정전 1급 공업사
기술사	차량											
기능장												
기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차량의 제조 또는 정비업체 ○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 판금·도색관련 업무 제외) *법 개정전 1급 공업사												

⑯ **자동차운전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북	❖ (자격증) 자동차운전 관련 자격증(제1종 대형운전면허)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당해 분야 인정범위(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도로보수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 도로교통법 개정('18.4.25.)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td> </tr> </table>	○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도로보수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 도로교통법 개정('18.4.25.)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도로보수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 도로교통법 개정('18.4.25.)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⑰-1 전기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대구 강원 충남 제주	❖ (자격증) 전기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기술사</td> <td>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전기</td> </tr> <tr> <td>기사</td> <td rowspan="2">전기, 전기공사</td> </tr> <tr> <td>산업기사</td> </tr> </table>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당해 분야 인정범위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전기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감리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전기분야 조사인력 (보조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충남의 경우 전기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

⑰-2 전기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중앙 울산 경기 전남	<input type="checkbox"/>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자격증) 전기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기술사</td> <td>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전기</td> </tr> <tr> <td>기사</td> <td rowspan="2">전기, 전기공사</td> </tr> <tr> <td>산업기사</td> </tr> </table>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전기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감리
 -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전기분야 조사인력 (보조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학력)**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경기의 경우 전기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 부서에 근무

⑰-3 전기·전자분야(소방교)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서울	<p>□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p>❖ (자격증) 전기·전자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20px;">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div> ○ 당해 분야 인정범위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 전자 회로의 개발(응용), 전자기기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div>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p>❖ (학력)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p>※ 서울의 경우 전기·전자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부서에 근무</p>
----	--

⑱-1 정보통신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중앙 인천 강원 전북 제주 창원	<p>❖ (자격증) 정보통신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td> </tr> <tr> <td>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기사</td> <td>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td> </tr> <tr>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td> </tr> </table>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p>○ 당해 분야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부서 및 D/B설계·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 통신, 방송, 무선, 정보설비 구축·설계·운영 -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⑱-2 정보통신분야(전산)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서울 경기	<p>❖ (자격증) 정보통신(전산)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td> </tr> <tr> <td>기사</td> <td>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빅데이터 분석</td> </tr> <tr>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정보처리</td> </tr> </table>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p>○ 당해 분야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부서 및 D/B설계·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⑱-3 정보통신분야(통신)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전남

❖ **(자격증)** 정보통신(방송, 무선, 통신)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 당해 분야 인정범위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통신, 방송, 무선설비 구축·설계·운영
-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⑱-4 정보통신분야(정보보안)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서울
경기

❖ **(자격증)** 정보통신(정보보안)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산업기사	

○ 당해 분야 인정범위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실무경력
 - 시스템 보안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네트워크 보안,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안 관련 업무
-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⑱-5 정보통신분야(빅데이터 분석)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강원 경남	<p>❖ (자격증) 정보통신(빅데이터 분석)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사</td> <td>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r>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able>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p>○ 당해 분야 인정범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데이터 관리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데이터 관리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데이터 관리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①9-1 화학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전북	<p>❖ (공공경력)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화학부대 :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p>
----	--

①9-2 화학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울산 경기 충남 전남	<p>□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p>❖ (자격증)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기술사</td> <td>화공</td> </tr> <tr> <td>기능장</td> <td>위험물</td> </tr> <tr> <td>기사</td> <td>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td> </tr> <tr> <td>산업기사</td> <td>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td> </tr> </table> <p>○ 당해 분야 인정범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설계 -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div> <p>❖ (학력)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p>※ 충남의 경우 화학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 부서에 근무</p>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①9-3 화학분야(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제주
창원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자격증)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 당해 분야 인정범위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설계
 -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공공경력)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화학부대 :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

①9-4 화학분야 [소방사]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중양 인천 경남	<p>□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p>❖ (자격증)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기술사</td> <td>화공</td> </tr> <tr> <td>기능장</td> <td>위험물</td> </tr> <tr> <td>기사</td> <td>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td> </tr> <tr> <td>산업기사</td> <td>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td> </tr> </table> <p>○ 당해 분야 인정범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설계 -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div> <p>❖ (학력)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p>❖ (공공경력)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화학부대 :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p> </div>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①9-5 화학분야 [소방교]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중양 대전	<p>❖ (학력)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	--

①9-6 화학분야 [소방장] / 시험절차(필기, 면접)

광주 경기	<p>❖ (학력)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	--

①9-7 화학분야 [소방장] / 시험절차(필기, 면접)

서울	<p>□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p>❖ (자격증)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기술사</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화공</td> </tr> </table> <p>○ 당해 분야 인정범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인정 실무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설계 - 화학분석에 대한 연구 -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div>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p>❖ (학력)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p>※ 서울의 경우 화학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부서에 근무</p>	기술사	화공
기술사	화공		

②0 회계분야 [소방교] / 시험절차(필기, 체력, 면접)

전북	<p>❖ (공공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회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근무(연구)경력은 회계관련 실무경력에 한함</p> <p>※ 임용예정계급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p> <p>*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p>
----	--